■민족문화연구 제84호(2019.08.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53-79.
http://doi.org/10.17948/kcs.2019..84.53

【특집1: 일본 교토대학 가와이문고의 학술적 가치(2)】

朝鮮後期 서울 名門家의 家計經營
—京都大學 河合文庫 소장 안동김씨 金壽增 남매 분재기 분석—

안승준(安承俊)*

목 차

1. 머리말
2. 자료소개
3. 분재내용과 성격
4. 맺음말

국문초록

일본 京都大學 東京大學에는 서울 壯洞의 안동김씨, 會賢洞의 동래정씨, 內寺·尙宮 등 京居 양반이나 왕실 주변 인물의 고문서가 다수 전한다. 이 글에서는 서울의 대표적 가문인 안동김씨 金壽增·金壽恒 남매의 분재기를 소개하고 이들의 재산규모와 그 양태를 살펴보았다.

1672년 당시 안동김씨 金壽增 형제 남매가 분재한 재산은 노비 410구 전답 500여 斗落에 달하였다. 17세기 중엽 과거와 관직, 禮學을 주업으로 하는 서울의 學術官僚型 양반의 재산보유 규모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례로 판단된다. 노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답이 적은 것이 영남 등 같은 시기 여타 양반가와 차이가 나는 점이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연구실장.

분재기에 나타나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봉사조가 노비 205구, 전답이 100여 두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게 책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봉사조 재산을 종가에서 운영토록 하는 것은 자녀 간 균분의 본 뜻을 저버리고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지만 이는 주자학적 질서를 가정 경제 운용에 적용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오히려 사대부들이 장자의 경제적 지위를 공고히 해주는 본보기가 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김씨가의 노비는 대부분 경상도, 전라도, 함경도 등 전국의 군현에 분포한다. 이들은 使喚 노비가 아니라 身貢 노비로 존재한다는 것으로 노비에 대한 納貢 중심의 경제구조이다. 이와 같이 토지와 결부되지 않은 노비의 보유와 운용은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를 지닌다.

주제어: 安東金氏, 金壽增, 金壽恒, 金尙憲, 東萊鄭氏, 分財記.

1. 머리말

조선조 양반은 그들의 정치 사회적 위상뿐만 아니라 경제적 위상 또한 절대적이었다. 1494년(성종 24) 「李瑗娚妹和會文記」에는 서울의 京居士族인 李孟賢(1436-1487)의 財産保有實態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본 分財記 안의 소유 노비 상황을 분석해보면 당시 9명의 자녀가 分財한 노비의 총 숫자는 758구이며, 조선 8도의 72개 군현에 분산 거주하고 있었다.[1] 상속문서 상에서 볼 때 토지는 분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규모가 적거나 영세하였다. 따라서 15세기까지 양반 재산이 중심은 노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6-18세기에 이르러 그 상황은 역전되어 토지가 재산의 중심이 되는 구조로 변화해 갔다. 이는 임진왜란(1592)·병자호란(1636)이라는 두 전쟁 시기를 거치면서 신분질서가 와해되거나 느슨해지면서 動産으로서의 노비의 재산적 가치가 현저하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16세기에 접어들어 지방 중심으로 양반이 거주하게 되는데 특히 安東을 중심으로 유교가 성행한 경상도 권역에 분재기가 많이 傳存한다. 이들 在地兩班의 일반적 노비 보유 규모는 대개 60-80구였다.[2]

---

1) 文叔子,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경인문화사, 2004, 191-193면.

일본 京都大學 東京大學에는 서울 壯洞의 안동김씨, 會賢洞의 동래정씨, 內寺·尙宮 등 京居 양반이나 왕실 주변 인물의 고문서가 다수 전한다. 19세기 말부터 일제시기에 걸쳐 서울 경기 지방의 고문서 소장가, 특히 서울 班家의 고문서가 국내외로 搬出되었기 때문이다. 안동김씨 壯洞派는 仁祖 때의 명신인 仙源 金尙容(1561-1637), 淸陰 金尙憲(1570-1652)을 비롯하여 조선 후기 순조, 헌종, 철종 대에 왕실의 외척으로 정권을 잡아 3명의 왕비와 15명의 政丞, 判書와 大提學 등 많은 名臣을 배출하였다. 따라서 당시 조선 제일의 세도가가 되어 이른바 '壯洞金氏'라고 별칭되었다. 안동김씨는 정치·사회적 지위뿐 아니라 학술적으로도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가문이었다. 金壽興, 金壽恒, 金昌集, 金祖淳, 金逌根, 金左根, 金興根 등 수많은 안동김씨 인물의 전적이 국내외에 흩어졌다.[3] 이 글에서는 서울의 대표적 가문인 안동김씨 金壽增·金壽恒 남매의 분재기를 소개하고 이들의 재산규모와 그 양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자료소개

본 안동김씨 분재기는 2014-1917년 사이에 있었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연구과제, 고려대학교 해외 韓國學資料센터 구축사업 과정에서 발굴, 소개된 것이다.[4]

【文書槪要】

○ 문 서 명 : 金壽增 13娚妹 和會文記
○ 작성시기 : 1672년(현종 13)
○ 발·수취자 : 金壽增 嫡庶 13남매
○ 문서크기 : 1,598cm
○ 집 필 자 : 金壽增(1626-1701)
○ 원소장처 : 京都大學 종합도서관

---

2) 李榮薰, 「古文書를 통해 본 朝鮮前期 奴婢의 經濟的 性格」, 『韓國史學』 제9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사학연구실, 1987, 102-103면.

3) 東京大學 아가와 문고(阿川文庫)에도 金興根(1796-1870)의 內賜本 豊沛賓興錄 등 다수의 안동김씨 고문헌이 보관되어 있다.

4) 고려대학교 해외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korea.ac.kr/), 연구책임자: 정우봉 교수.

1) 분재 시기와 성격

본 문서는 앞부분이 망실되어 분재시기와 성격, 그리고 집필자를 특정할 수 없다. 다만 서문과 立議, 그리고 문서 말미에 적기된 분재 참여자의 품계와 직책 과거 사실 등에서 그 단서를 유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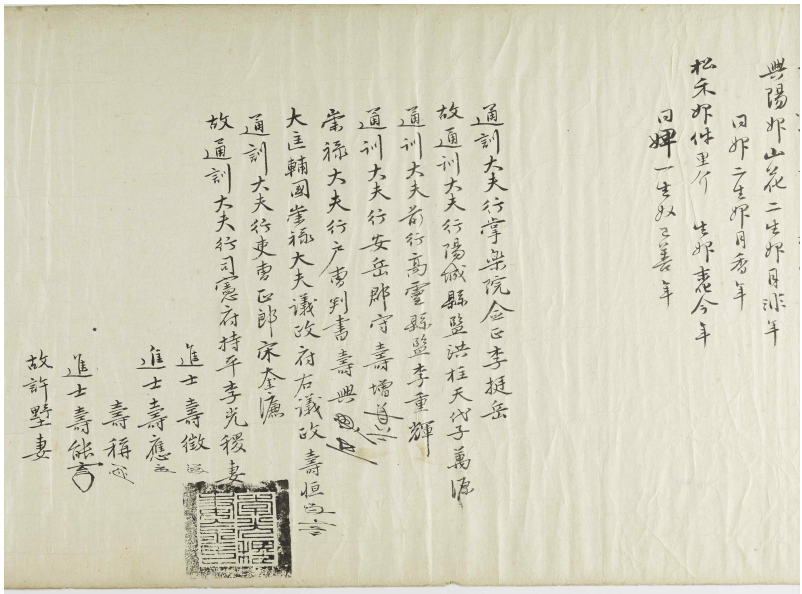
〈分財 參與者의 姓名과 職銜〉

① 1女 : 李挺岳(1615-1678, 通訓大夫行掌樂院僉正)[5]
② 2女 : 洪柱天(?-?, 故通訓大夫行陽城縣監)[6], (代子 洪萬源)
③ 3女 : 李重輝(1622-1678, 通訓大夫前行高靈縣監)[7]
④ 1男 : 金壽增(1624-1701, 通訓大夫行安岳郡守)
⑤ 2男 : 金壽興(1626-1690, 崇祿大夫行戶曹判書)
⑥ 3男 : 金壽恒(1629-1689,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
⑦ 4女 : 宋奎濂(1630-1709, 通訓大夫行吏曹正郎)[8]
⑧ 5女 : 李光稷(?-?, 故通訓大夫行司憲府持平)[9]
⑨ 庶母 淸州韓氏(金光燦의 後妻)
⑩ 庶 1男 : 金壽徵(1636-1706, 進士)
⑪ 庶 2男 : 金壽應(1640-1695, 進士)
⑫ 庶 3男 : 金壽稱(1642-1704)
⑬ 庶 4男 : 金壽能(1644-1704,文科, 縣監)
⑭ 庶 1女 : 許墅 妻(故)

---

5) 이정악은 본관이 용인. 생원시에 합격하고, 효종 초에 洗馬를 거쳐 후에 서산 군수, 파주 목사, 장악원 첨정, 연안 부사 등의 관직을 지냈다.
6) 홍주천은 본관이 豊山. 광해군 때 대사헌을 지낸 洪履祥의 손자이며 이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 양성 현감 등을 지냈다. 숙종 때 도승지, 형조판서, 판돈녕부사 등의 높은 벼슬을 지낸 洪萬朝가 그 아들이다.
7) 이중휘는 본관이 전주이며, 1654년(효종 5) 생원시에 합격하고 고령현감 금산군수 등을 역임했다.
8) 송규렴은 본관이 은진, 호는 霽月堂. 1655년 문과에 급제, 사예, 응교, 수찬, 사성, 공조 참의, 충청감사, 대사헌, 대사간, 우참찬, 예조 판서 등의 관직을 역임했다.
9) 이광직은 본관이 한산이며, 호는 希菴이다. 1650년(효종 1)에 생원시, 1660년(현종 1) 식년시 문과에 합격하여 翰苑이 되었다. 검열 지평 정언 등 여러 관직을 지냈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an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ansan&dataType=01&contents_id=GC02500645(2019.06.28 검색).

〈김수증 남매 분재기, 分執者 직함 서명 부분〉



和會 분재에 分執者로 참가한 사람은 김광찬의 嫡庶 자녀 13인과 庶母 淸州 韓氏이다. 구체적으로는 적자 김수증 등 延安金氏 소생 3남 4녀, 서자인 청주 한씨 소생 4남 1녀이다. 화회에 직접 참석한 사람은 분재 당시 사망한 2녀 홍주천과 庶 1녀 許墅의 처 김씨를 제외한 11인이었다. 홍주천은 그 아들 洪萬源이 대신 참석하였다. 許墅는 領議政을 지낸 許積의 아들이다.

이 분재는 財主가 없고 형제자매가 참여하여 同議를 나타내는 着名署押을 하고 圖書가 찍혀있다는 사실에서 형제자매간 재산을 나누어 가진 和會 분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명단에서 집필자가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분재 서문과 完議에 나타난 言辭를 검토해보면 이 문서의 집필자가 장자인 金壽增임을 어렵사리 추정할 수 있다.[10] 김수증이 이 분재기의 主宰者이자 執筆者라는 사실은 분재 서문과 立議 부분의 곳곳에서 감지된다. 우선 서문 부분에서 선조의 遺訓을 들어 형의 입장에서 아우들을 훈계하는 부분, 그리고 뒤에 서술하지만 立

10) 金壽增의 집필인 여부는 필적 감정 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議⑦에서 아우 김수흥과 김수항의 연이은 과거 합격과 이에 따라 별급을 받은 입장에서 다른 형제들과 같은 양의 재산을 상속받기에 미안함을 표한 것에 대하여 그 뜻의 일부를 들어준다는 점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다. 立議⑦ 부분은 분재기 필자가 김수흥, 김수항이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이를 가납한다는 표현 등을 볼 때 분재기 필자가 형 김수증이라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작성 시기에 대해서는 김수증 형제들의 官歷이 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에 자세히 나오고 있고 이 같은 사실을 위의 직함과 비교・검토해보면 시기 추정 또한 가능하다. 金壽恒은 1672년(현종 13) 5월 16일에 우의정이 되었다가, 동년 11월 30일에 분재기 내의 관직인 좌의정으로 승진하였다.[11] 長女壻 李重輝는 1671년(현종 12)에 高靈縣監에 재직하다가 그해 12월 8일 賑恤 미흡으로 파직되었다.[12] 이 때문에 분재기에서는 전 高靈縣監이라고 하였다. 金壽增은 1672년(현종 13) 분재기 내의 관직인 安岳郡守를 지내다가 그해 7월 15일에 파직되었다.[13] 金壽興은 1666년(현종 7)에 처음으로 戶曹判書가 되었다가 1670년 崇祿大夫, 1671년(현종 12) 6월 13일에 두 번째 호조판서를 역임하였고,[14] 1673년(현종 14) 4월 24일에 우의정에 제수되었다.[15] 宋奎濂은 1672년(현종 13)에 吏曹佐郎이 되었는데, 분재기의 이조좌랑은 왕조실록 기사와 차이가 있다.[16] 이상 분재기에 등장하는 有官職者의 官歷을 고려할 때 김씨 가문의 분재시기는 1672년(현종 13)이며, 김수증이 안악군수에서 파직된 7월 15일 이전인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이 분재기는 1672년(현종 12) 전반기에 작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아버지 金光燦(1597-1668) 사후 4년이 지난 때였다. 金壽恒이 찬한 「先府君行狀」에 분재 당사자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先妣는 모두 3남 5녀를 낳았다. 큰아들은 수증(壽增)으로, 경인년(1650, 효종

11) 『현종실록』 20권 현종 13년 5월 16일 신유.
12) 『현종개수실록』 25권 현종 12년 12월 8일 을유.
13) 『현종실록』 20권 현종 13년 7월 15일 무오.
14) 『현종실록』 12권 현종 7년 8월 11일 기미; 18권 현종 11년 윤2월 17일 갑진; 19권 현종 12년 6월 13일 임진; 21권 현종 14년 4월 24일 계해.
15) 『현종실록』 12권 현종 7년 8월 11일 기미.
16) 『현종개수실록』 26권 현종 13년 7월 15일 무오.

1) 생원시에 합격했고 성천 부사(成川府使)를 지냈다. 그다음은 수흥(壽興)으로, 을미년(1655) 문과에 급제했고 영의정(領議政)을 지냈으며, 선군의 명으로 출계하여 승지공(承旨公) [김광혁(金光爀)]의 후사가 되었다. 그다음은 수항(壽恒)으로, 신묘년(1651) 문과에 급제했고 좌의정(左議政)을 지냈다. 큰딸은 목사(牧使) 이정악(李挺岳)에게 시집갔고, 그다음은 현감(縣監) 홍주천(洪柱天)에게 시집갔으며, 그다음은 군수(郡守) 이중휘(李重輝)에게 시집갔고, 그다음은 사간(司諫) 송규렴(宋奎濂)에게 시집갔으며, 그다음은 지평(持平) 이광직(李光稷)에게 시집갔다. 선군의 측실(側室)은 4남 1녀를 두었으니, 큰아들은 수징(壽徵)으로, 계묘년(1663, 현종 4) 진사시에 합격했고 와서 별제(瓦署別提)를 지냈다. 그다음은 수응(壽應)으로, 병오년(1666) 진사시에 합격했다. 그다음은 수칭(壽稱)이고, 그다음은 수능(壽能)으로 계축년(1673) 문과에 급제했고 광흥창 주부(廣興倉主簿)를 지냈다. 딸은 허서(許墅)에게 시집갔는데, 일찍 죽고 말았다.[17]

위 행장의 내용과 분재기의 嫡妾 자녀의 수는 동일하다. 행장에는 先男後女 방식으로, 분재기에는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특징이다. 행장에 '側室有四男一女'라고 표기된 壽徵, 壽應, 壽稱, 壽能, 許墅의 妻가 모두 분재기에는 分執 당사자로 등장한다. 수징, 수응, 수칭, 수능 4형제 중 수징, 수응은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수능은 진사 및 문과에 합격하였다. 이들은 金光燦, 後妻 韓氏의 소생들인데, 이들은 매우 특이한 신분적 이력을 가지고 있다. 김광찬의 前妻 延安金氏는 金悌男(1562-1613)의 손녀였다. 김제남은 宣祖의 丈人이면서 仁穆大妃의 부친이다. 김제남이 永昌大君을 옹립하려 했다는 모함을 받아 光海君에 의해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함에 따라 그의 딸도 김광찬과 강제로 이혼당하였다. 인조반정 이후 김제남이 復權되자 김광찬의 正妻로 복귀하였다. 이에 후처로 들어왔던 청주한씨가 첩의 신분으로 추락하였다. 이 문제로 김씨 집안에서는 청주한씨의 伸冤 문제가 촉발되기도 하였다.[18]

---

17) 「先府君行狀」, 『文谷集』 卷21 行狀. "先妣凡擧三男五女: 男長曰壽增, 庚寅生員, 成川府使, 次曰壽興, 乙未文科, 領議政, 以先君命, 出後承旨公, 次曰壽恒, 辛卯文科, 左議政; 女長適牧使李挺岳, 次適縣監洪柱天, 次適郡守李重輝, 次適司諫宋奎濂, 次適持平李光稷. 先君側室有四男一女: 男長壽徵, 癸卯進士, 瓦署別提, 次壽應, 丙午進士, 次壽稱, 次壽能, 癸丑文科, 廣興倉主簿; 女適許墅, 蚤歿."

1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편, 『古文書集成 105—공주 안동김씨 김상헌・진주유씨 유충걸 후손가 고문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4, 25면.

2) 安東金氏 家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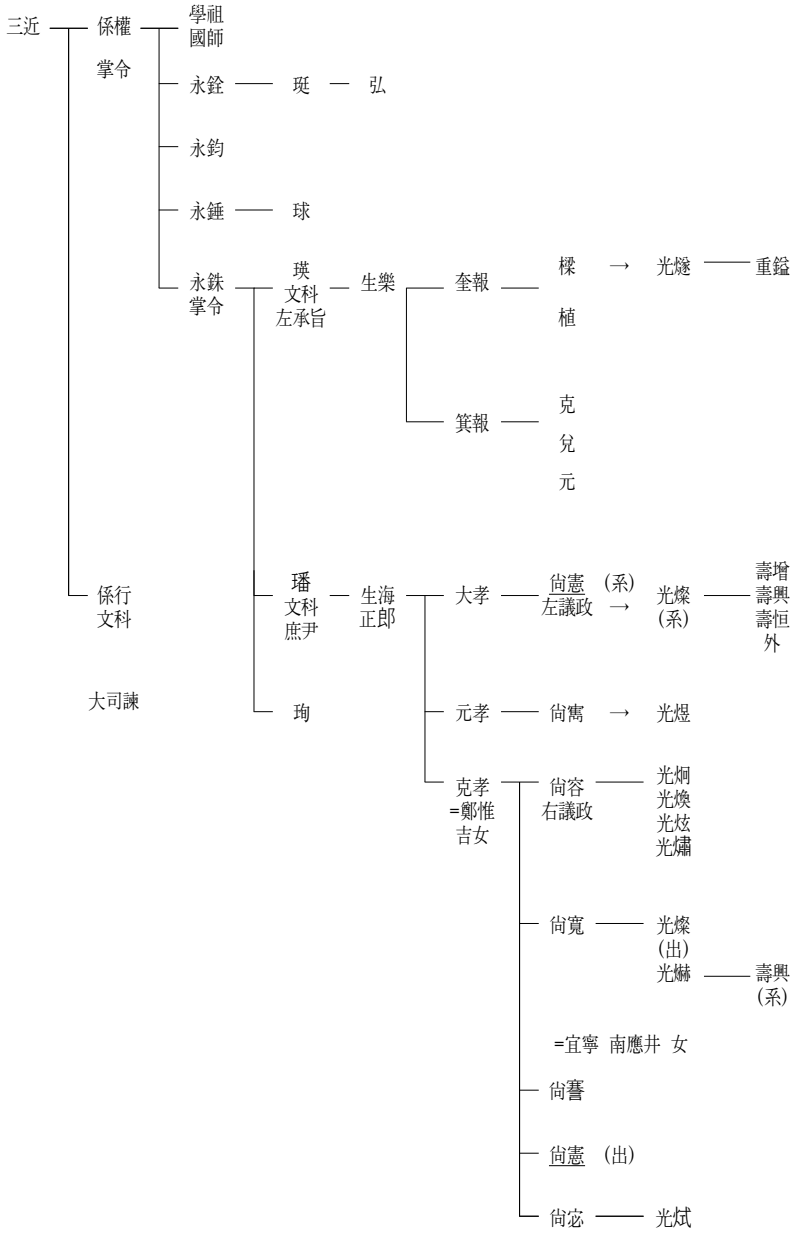
安東 豊山의 素山마을로 이거한 金三近(?-1465)이 1419년(세종 1) 이래 그의 아들 金係權(生沒未詳) 및 金係行(1431-1517) 형제 때부터 연이어 관직에 나아갔다. 김계권은 漢城 判官을 지냈고, 김계행은 진사시와 문과에 합격한 뒤 大司諫까지 지냈다. 김계권의 제5자 金永銖(1446-1502)는 음직으로 사헌부 장령을 지냈다. 김영수의 장자 金瑛(1475-1528)과 차자 金璠(1479-1544)은 모두 문과에 급제하였는데, 전자는 좌승지를, 후자는 평양 서윤 등을 각각 지냈다. 이때부터 문호가 크게 신장되었다. 김영・김번 형제는 서울에도 터전을 잡았으니, 김영은 청풍계(淸風溪・靑楓溪; 玉流洞)에, 김번은 장의동(壯義洞; 壯洞・靑雲洞)에 각각 자리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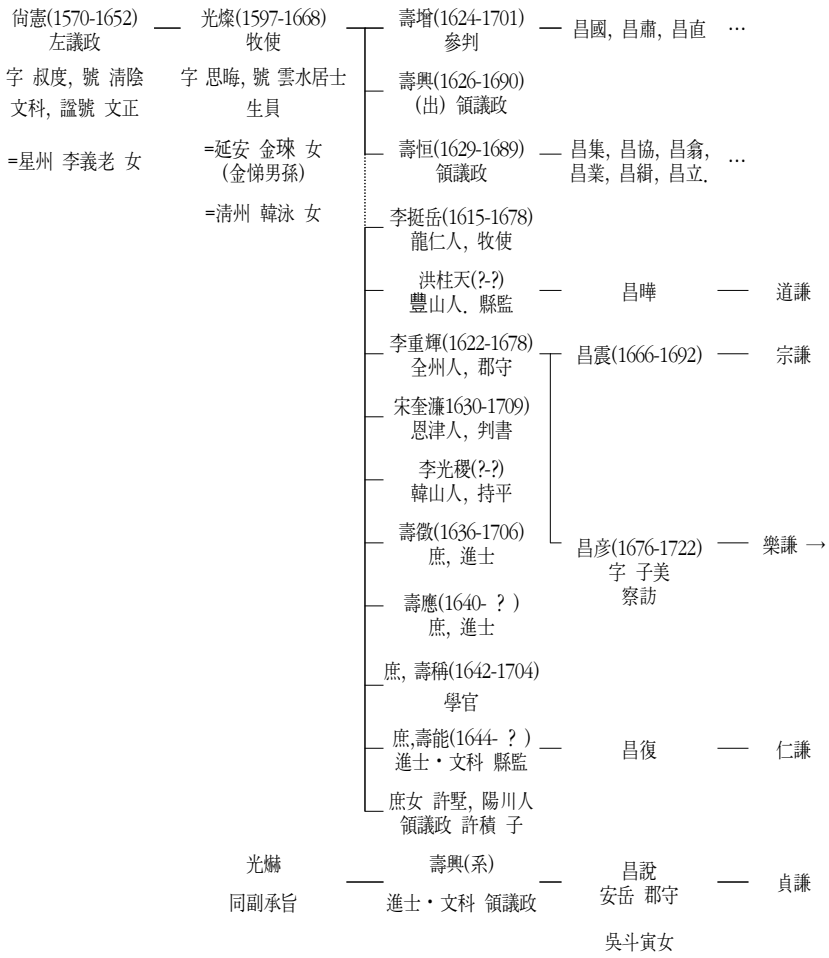
김상헌은 김번의 증손자인데, 그의 할아버지는 형조정랑을 지낸 金生海(1512-1558)이고 아버지는 金大孝이다. 원래 김상헌은 김생해의 제 3자 金克孝의 제 4자로 태어났으나, 백부 김대효의 후사가 되었다. 김극효는 5자를 두었으니, 장자가 仙源 金尙容(1561-1637)이고, 차자 이하가 金尙寬・金尙謇・金尙憲・金尙宓이다. 김상헌은 역시 소생이 없어서 형 김상관의 아들 金光燦(1597-1668)을 후사로 들여 가계를 이었다. 김광찬은 생원시에 입격한 뒤 음직으로 출사하여 목사 등을 지냈는데, 전처 延安金氏에게서 金壽增・金壽興・金壽恒을 두었고 후처 淸州韓氏에게서 金壽徵・金壽應・金壽稱・金壽能을 두었다.[19]

〈安東金氏 金壽增 家系〉

宣平 …… 斤重 — 得雨 典農寺 正 — 革 — 三近 生員 縣監 ……

19) 본 가계도는 『安東金氏世譜』(1725년 乙巳譜) 및 김동석, 「공주 안동김씨 김수칭 후손가 소장 유묵・간독첩에 대하여」, 『公州 安東金氏 金壽稱 後孫家 所藏 遺墨・簡牘帖』,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출판 예정을 참고하였다.


三近
係權
學祖
國師
掌令
永銓
珽
弘
永鈞
永錘
球
永銖
掌令
瑛
文科
左承旨
生樂
奎報
楳
→
光燧
重鎰
植
箕報
克
兌
元
係行
文科
大司諫
璠
文科
庶尹
生海
正郎
大孝
尙憲
左議政
(系)
→
光燦
(系)
壽增
壽興
壽恒
外
珣
元孝
尙寯
→
光煜
克孝
=鄭惟
吉女
尙容
右議政
光炯
光煥
光炫
光爀
尙寬
光燦
(出)
光爀
壽興
(系)
=宜寧 南應井 女
尙謇
尙憲 (出)
尙宓
光烋



3. 분재내용과 성격

분재는 財主에 의한 許與分財, 同生들에 의한 和會分執으로 대분된다. 허여분재는 다시 자식 각자의 몫을 나누어 주는 分衿(또는 衿給)과 특별한 能力이나 優越的 行爲에 대한 別給으로 구분된다. 형태적으로 볼 때 분재기는 분재서문과 분재내역을 적은 後錄 부분, 그리고 분재내용에 대한 합의 또는 同議를 나타내는 署名, 圖書 부분으로 구분된다. 화회 분재의 경우 형제자매 사이에

분재 원칙과 奉祀 墓直 등 爲先에 관한 사항, 庶子 庶母 등 가문이 처한 여러 문제에 대하여 협의하여 동의한 사안에 대해 사안별로 열거한다. 이를 분재 立議 혹은 完議라고 한다. 요컨대, 서문에는 개략적인 분재 원칙이나 선조들의 遺訓이나 당부사항을 적고, 합의된 구체적 내용은 立議 형태로 摘記한다. 본 안동김씨 문중에는 유난히 立議의 내용이 많고 구체적이다. 奉祀와 봉사자가 강조되고 科擧가 중시되는 17세기 중엽의 사회상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다.

1) 분재 序文·立議·遺書의 脫草와 飜譯[20]

(1) 분재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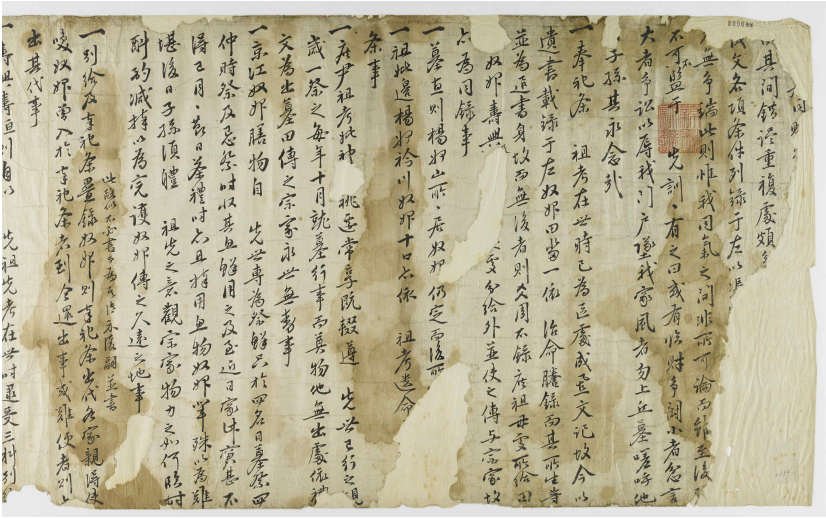
01 ■■■同■(則) (…) ■
02 ■其間錯誤重複處 頗多■ (…) ■
03 成文 各項條件 列錄于左 以憑■ (…) ■
04 ■無爭端 此則惟我同氣之間 非所可論 而雖至後■
05 不可不監于先訓 訓有之曰 或有臨財爭鬪 小者忿言
06 大者爭訟 以辱我門戶 墜我家風者 勿上丘墓 嗟呼 他
07 ■子孫 其永念哉

그 사이에 착오가 있거나 중복된 곳이 많아서 (…) 成文하고 각 항의 조건을 아래에 列錄하여 증거로 삼아 뒷날 다툼의 단서가 없도록 한다. 이것은 우리 同氣 사이에서는 거론할 것이 아니지만 훗날 선조의 훈계를 거울로 삼지 않을 수 없다. 선조의 유훈에 이르기를, "만약 분재에 대하여 다툼을 벌이면 작게는 서로를 원망하게 되고 크게는 소송으로 다투게 되어 우리 문호를 욕되게 하여 家風을 실추시키고 선조의 무덤에 오르지 아니하니[21], 아! 안타깝다. 다른 자손들은 영원히 염두에 두어여 할 것이다" 하였다.

---

20) [凡例 ■: 磨耗되어 判讀 不能 글자, (天): 天字로 추정한 글자, ■ (…) ■: 磨耗되어 판독할 수 없는 글자.
21) '선조의 무덤에 오르지 아니하니'는 형제들이 분재 때문에 다투어 묘소에 나아가 제사를 모시지 않게 된다는 뜻이다.

〈序文과 立議 부분〉



(2) 分財 立議

立議①

08 一 奉祀條 祖考在世時 已爲區處 成置文記 故今以
09 遺書載錄于左 奴婢田畓 一依治命謄錄 而其所生等
10 並爲追書 身故而無後者 則爻周不錄 庶祖母處所給田
11 ▣奴婢 壽興▣ (…) ▣處 分給外 並使之傳與宗家 故
12 亦爲同錄事

하나. 봉사조는 祖考[22] 생존 시에 이미 區處하고 문기를 만들어 두었다. 이에 여기서는 조부의 유서를 아래에 기록해둔다. 노비와 전답은 오로지 遺命에 따라 謄錄하되 노비 소생들은 함께 追記한다. 사망하고 자손이 없는 노비는 삭제하고 기록하지 않는다. 庶祖母[23]에게 지급한 전답과 노비는 壽興 (…) 에게 분급하고 그 이외의 것은 宗家 傳與하기로 했으므로 [종가] 몫에 함께 기록한다.

22) '祖考'는 金壽增 형제들의 조부, 淸陰 金尙憲을 지칭한다.
23) '庶祖母'는 조부 金尙憲의 첩이다.

立議②
13 一 墓直則楊州山所 所居奴婢仍定 而後所▣ (…) ▣

하나. 묘직노는 양주 산소 부근에 거주하는 노비를 그대로 정하되, 그 후 소생은 (…)

立議③
14 一 祖妣邊 楊州衿川奴婢十口 亦依祖考遺命▣ (…) ▣
15 條事

하나. 祖母[24]쪽으로 상속된 양주 금천 거주 노비 10구 또한 조부의 遺命에 따라 (…) 한다.

立議④
16 一 庶尹祖考妣神□(主) 祧遷常享旣輟 遵先世已行之規
17 歲一祭之 每年十月 就墓行事 而奠物他無出處 依禮
18 文爲出墓田 傳之宗家 永世無動事

하나. 庶尹 先祖妣[25]의 神主를 祧遷[26]常享을 중지한 것은 선대에서 이미 시행한 규식이므로 歲一祭[27]로 대신하며, 매년 10월 墓前에 나아가 제사를 모신다. 올리는 祭物은 다른 곳에서 나올 곳이 없으므로 禮文에 따라 墓田[28]에서 충당하며 (묘위답을) 종가에 전해주고 영원토록 옮기지 않도록 한다.

立議⑤
19 一 京江奴婢膳物 自先世專爲祭鮮 只於四名日墓祭 四

24) '祖母'는 조부 金尙憲의 妻, 星州李氏이다.
25) '庶尹 先祖妣'는 金壽增의 5대조이며, 平壤府庶尹을 지낸 金璠의 妻 南陽洪氏이다.
26) '祧遷'은 사당에 四代奉祀의 代數가 다한 신주가 있다면 最長房인 사람에게로 옮겨 제사를 지내는 행위이다.
27) 한식 또는 10월에 5대조 이상의 묘소(墓所)에서 지내는 제사를 관행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時祀, 時享, 墓祀라고 하며, 1년에 한 번 제사를 모신다고 하여 歲一祭, 歲一祀라고도 한다. 「시향」,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사전, http://folkency.nfm.go.kr/kr/topic/detail/4398(2019.06.28 검색).
28) '墓田'은 位土畓이다.

20 仲時祭 及忌祭時 收其魚鮮用之 及至近日 家計窘甚 不
21 得已月月節日祭禮時 亦且捧用魚物 奴婢輩殊以爲難
22 堪 後日子孫 須體祖先之意 觀宗家物力之如何 臨時
23 斟酌減捧 以爲完護奴婢 傳之久遠之地事
24 此段 似不必書 而爲其傳示後嗣 並書

하나. 京江[29]에 거주하는 노비의 膳物[30]은 선대로부터 오로지 제사 때의 生鮮으로 하였다. 다만 四名日 묘제[31]와 四仲時祭[32] 및 忌祭 때에 그 魚鮮을 노비에게 收貢하여 쓴다. 최근에 이르러 家計의 窘塞함이 심하여 다달이 지내는 節日祭禮 때에 魚物을 받아 써니 노비들이 특히 감당하기 어렵게 여긴다. 뒷날 자손들이 선조의 뜻을 본받아서 宗家의 재정이 어떠한가를 살펴서 시의에 맞추어 짐작하여 收貢을 들어주어 노비를 完護하고, 이를 오래도록 전한다. 이것은 구태여 여기에 쓰지 않아도 되지만 후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함께 쓴다.

立議⑥
25 一 別給及奉祀條 疊錄奴婢則奉祀條出代 各家親得使
26 喚奴婢 曾入於奉祀條者 到今還出事 或難使者 則▣
27 出其代事

하나. 別給 및 봉사조에 중첩으로 기록된 노비는 봉사조에서 대신 내준 것이다. 분재 각 집안에서 親得하여 使喚 노비가 봉사조에서 들어간 것은 지금

29) 뚝섬(纛島)에서부터 楊花津에 이르는 한강 일대이다. 「京江」,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원형 용어사전, http://www.culturecontent.com/dictionary/dictionaryView.do(2019.06.28 검색).
30) '膳物'은 노비가 상전에게 바치는 신공의 일종이다. 布로 바치는 元貢 이외에 그 지역의 특산물을 바치는 것을 膳物이라고 한다.
31) '四名日 묘제'는 설, 한식, 단오, 추석의 명절이다. 이때 지내는 제사라 하여 절사[節祀, 節祠]라 하는데, 넓은 의미에서 명절에 지내는 묘제(墓祭)와 차례(茶禮)를 총칭하기도 한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도시 풍속에 묘소에 올라가 제사 지내는 것을 절사라 하고 설, 한식, 단오, 추석 명절을 사명일(四名日)에 행한다고 하였다. 이날에는 술, 과일, 포, 식해, 떡, 국수, 탕, 적 같은 음식으로 제사지내며, 집안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한식과 추석에 가장 성행한다고 하였다. 「한식절사」,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사전, http://folkency.nfm.go.kr/kr/topic/detail/5236(2019.06.28 검색).
32) '四仲時祭'는 春夏秋冬의 仲月인 음력 2월, 5월, 8월, 11월에 吉日을 골라 부모로부터 고조부모까지 지내는 제사이다. 「사중시제」,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국고전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2019.06.28 검색).

각각의 집안으로 되돌려 준다. 혹 사환하기 곤란한 노비는 교체하여 내준다.

立議⑦
28 一 壽興壽恒 則自以先祖先考在世時 逮受三科別□(給)
29 視諸兄等所得 稍多不願 與他同生一體受分 言出悃愊
30 終始違拒 亦非誠心相待之道 略爲差減 以成其志事

하나. 壽興과 壽恒은 先祖, 先考 생존 시에 3번의 과거합격으로 인하여 별급한 것이다. 여러 형이 상속받은 것에 비추어 조금이라도 많은 것을 원하지 않고, 다른 同生들과 같이 分數대로 받고자 하니, 그 말이 정성과 간절함에서 나와 시종 거절하니 이 또한 성심으로 서로 대하는 도리가 아니다. 약간을 差減해줌으로써 그 뜻을 이루도록 하였다.

立議⑧
31 一 同生等 先祖妣先考在世時 有文記別給外 親受使喚
32 收貢奴婢 曾無文記所付處 故俱爲計給於分衿事

하나. 同生들이 조모 및 선친께서 살아계실 때에 문기를 만들어 별급한 것 이외에 親得해 사환하거나 收貢하는 노비는 이전에 문기를 만들지 아니하고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함께 계산하여 分衿해 준다.

立議⑨
33 一 庶母家計艱難 庶弟妹皆無生理 若以常例分衿則數
34 少 奴婢所得無哉 今依先世已行之規 破格分給 庶母
35 則祖考時 親得奴婢及後所生 竝爲載錄事

하나. 庶母[33]의 家計가 가난하여 서자매가 살아갈 방도가 없다. 常例로 分衿한다면 그 숫자가 적고, 받을 노비도 없다. 지금 선대에서 이미 행한 규례에 따라 破格으로 분급해준다. 庶母는 조부 당시에 친득노비 및 그 후소생을

33) '庶母'는 김광찬의 첩, 청주한씨이다. 가계도 참조.

함께 기록한다.

立議⑩
36 一 外家分財之物 先君在世時 曾不收拾 奴婢等不爲花
37 名 今至三十年 不知其存沒虛實 若欲查得其時存之數 而
38 區處則散在各處 終年閱歲 難以整齊 姑以詳知者 及文
39 記中所付者 分執事

하나. 外家[34]에서 분재한 재산은 先君 생존 시에 수습하지 못하여 노비들을 花名[35]조차 못한 지가 30년에 이르러 그 存沒과 虛實을 알지 못한다. 현재 생존한 숫자를 조사하여 구처하고자 하나 각 처에 산재하여 한 해가 다가도 정리하기 어렵다. 우선 상세히 아는 노비 및 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을 나누어 갖는다.

立議⑪
40 一 文記出草後 連歲凶荒 京外人物死亡無數 奴婢中物
41 故可以詳知者 則爻周後出代充數 而旣已正書之後 則雖
42 知其物故 有難續續追改事

하나. 문기 초안을 작성한 뒤에 연이어 흉년이 들어 京外의 노비들 중 사망자가 헤아릴 수 없다. 노비 가운데 파악하여 잘 알 수 있는 자는 삭제 표시를 한 뒤에 대신 교체해 주어 숫자를 채워준다. 이미 분재기를 정서한 뒤에 비록 사망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때마다 추가하거나 바꾸기는 어렵다.

立議⑫
43 一 遺漏奴婢田畓 隨後聞見 平均分給 所得之家 則奴婢加
44 給一口 數少則以次分執 此亦出於先世前規事

하나. 遺漏 노비와 전답은 뒷날 聞見하는 대로 형제들이 평균해서 분급하

34) '外家'는 김광찬의 처가, 延安金氏(1596-1633)이다. 김씨부인은 金悌男의 손녀이다.
35) '花名'은 노비명단 혹은 그 명단을 기록하는 행위이다.

되, [유루노비를]획득한 집안에는 1구를 더 주되, 그 숫자가 적다면 다음에 분집한다. 이 또한 선대의 規例에 따른 것이다.

立議⑬
45 一 逃亡奴婢 勿論久近 雖不知其死生存亡 而早晩不無推得
46 之理 依例載錄於分衿事

하나. 도망노비는 시기의 오래고 가까움을 따지지 않고 비록 그 사생존망을 알지 못하더라도 조만간에 추쇄하여 획득할 방법이 없지 않기에 의례상 分衿한 가운데 기록해 둔다.

立議⑭
47 一 北道奴婢 則朝家事目 不許其主使喚收貢 而先世世
48 傳之物 亦不可棄而所錄 依他例分執事

北道奴婢[36]는 조정의 사목에 의거하여 그 주인이 사환과 收貢을 허락하지 않으나, 선대부터 내려온 世傳之物이라 내버려 두지 않고 기록해 두며 다른

36) '北道奴婢'는 함경도 소재 노비이다. 여기서 북방노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인조 대 이후 군역의 충당을 위해 함경도 등 북방지역의 私賤들의 額數를 파악하여 軍籍을 작성하고 흉년이 회복되는 동안 貢物의 侵責를 중지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啟文 등 국가적인 조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의 승정원 일기 기사 참조. 『승정원일기』 인조 3년 1625년 7월 3일 기유. "徐景雨, 以備邊司言啓曰, 今月十九日, 同知事吳允謙所啓, 北道私賤籍軍之規, 甚美矣. 士大夫等, 北道奴僕, 不爲分衿, 故族屬等, 無不侵之, 以此北地私賤, 不能支保矣. 李恒福知其此弊, 而且欲爲籍軍之計, 竝行籍錄, 仍給其價, 使臣爲句管此事, 當此時, 法令稍嚴明, 故奴僕之主, 亦不得擅自徵責, 臣亦出入九朔, 雖有疎漏之事, 而所益極多矣. 上曰, 此事依爲之. 其時所籍, 額數凡幾何? 事【缺二三字】往在己酉年間, 吳允謙爲御史, 咸興以北私賤, 盡爲刷出, 悉定軍役, 其數多至四千餘名, 今已十數年之久, 存沒推遷, 未知目今見籍, 凡幾何也. 大概士大夫北道奴婢, 緣道里遐遠, 不能尋常點檢, 一番送人, 則例徵積年之貢, 蕩其家産而來, 亦有疎遠族屬及全然不干之人, 托稱本主, 或爲稱念, 或爲親往, 多般侵責, 罔有倫緖, 本道守令, 多是武人, 且無識理, 品官任其無理, 無敢糾治, 北民之不得存接, 多由於此, 吳允謙目見其弊, 有此陳啓, 此誠蘇北民固邊圍之一大助也. 今若別遣御史, 則當此北路【缺一行半】, 事甚便益, 且當初廷議, 以奪人私賤, 爲未安. 凡定軍額, 欲自朝廷, 一一給價, 而四千餘名, 勢難徧償, 故其時受價者僅八百餘名, 而以臨海籍沒奴婢代給者, 多至五百三十四名, 臨海伸雪之後, 奴婢竝還本家, 其所代定者, 亦歸虛地矣. 其不得徧償, 有不均之患, 不若劃爲一例, 專數償給之爲公平也. 大概有其土然後有其人, 今北路比歲凶歉, 流亡殆盡, 朝夕將不得保, 則雖有奴婢, 其得久爲己物乎? 今宜勿論老少男女, 竝爲刷出, 各其名下, 懸錄本主姓名, 以爲後日推尋之地, 限北路蘇復間, 勿許徵貢. 其丁壯, 悉爲編伍, 其老弱女丁, 略助軍糧, 其有不有邦禁, 私往侵徵者, 所在官, 一一摘發啓聞, 論以制書有違之律, 宜當, 敢啓.' 傳曰, '依啓. 老弱女丁助餉事. 不允."

예와 같이 分執한다.

(3) 金尙憲의 遺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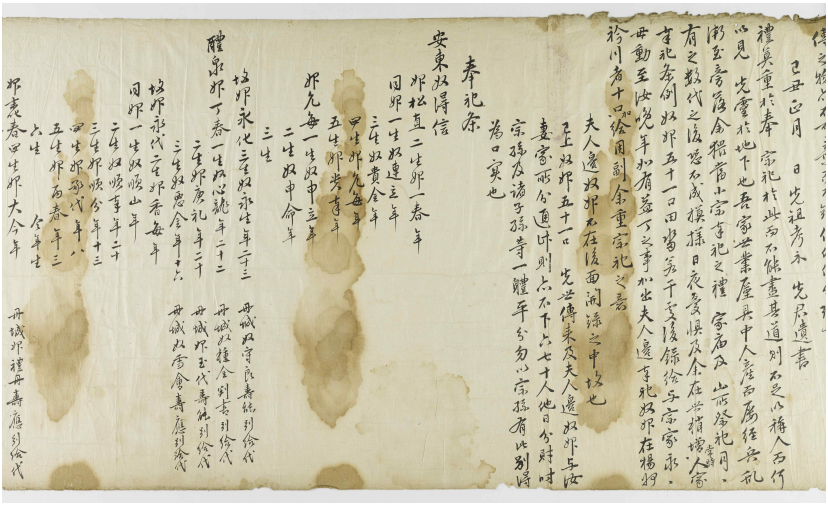
己丑正月 日 先祖考示先君遺書
禮莫重於奉宗祀 於此而不能盡其道 則不足以稱人 而何
以見先靈於地下也 吾家世業 廑具中人産 而屢經兵亂
漸至旁落 余猥當小宗奉祀之禮 家廟及山所祭祀 月月
有之 數代之後 恐不成模樣 日夜憂惧 及余在世稍增 常時人家
奉祀條例 奴婢五十一口 田畓若干處後錄 給與宗家 永永
毋動 至汝晩年 如有益丁之事 加出夫人邊 奉祀奴婢在楊州
衿川者 十口加給 用副余重宗祀之意
夫人邊奴婢 不在後面開錄之中故也
已上奴婢五十一口 先世傳來 及夫人邊奴婢 與汝
妻家 所分通計 則亦不下六七十人 他日分財時
宗孫及諸子孫等 一體平分 勿以宗孫有此別得
爲口實也

기축년[37] 정월 일. 조부[38]께서 선친[39]에게 준 遺書禮는 宗祀를 모시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여기에 그 도리를 다하지 아니하면 사람이라 말할 수 없으니 이러고도 어찌 선조의 영령을 지하에서 볼 수 있겠는가? 우리 집안의 世業은 가까스로 중간 정도 재산을 갖추었으나 여러 번 병란을 거치면서 점차 旁落[40]하였다. 내가 외람되이 小宗 봉사의 예를 담당하여 家廟 및 산소 제사가 달마다 있는데, 몇 대 뒤에는 그 꼴을 이루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밤낮으로 걱정하고 있다. 내가 사는 동안 조금 재산이 늘어 타 가문의 상시로 봉사하는 정도가 되었다. 노비 51구, 전답 약간의 곳을 後錄하여 종가에 주니 영원히 다른 몫으로 옮기지 말라. 네가 晩年에 이르러 만약 壯丁(노비)을 보탤 일이 있

37) '기축년'은 1649년(인조 27)이다.
38) '조부'는 金尙憲이다.
39) '선친'은 金光燦이다.
40) '旁落'은 재산 혹은 세력 따위가 다른 사람의 손에 떨어짐을 말하다. 「방락」,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국고전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1456&cid=50293&categoryId=50293(2019.06.28 검색).

다면 夫人 쪽[41]의 재산을 더 덜어내어 봉사노비로서 楊州와 衿川에 있는 자 가운데 10구를 더해 줌으로써 나의 宗祀를 중히 여기는 뜻에 부응토록 한다. [이는] 부인 쪽의 노비는 후면에 開錄한 것 중에는 없기 때문이다. 이상 노비 51구, 선대부터 전래된 노비, 부인 쪽에서 전래된 노비, 그리고 너의 처가[42]에서 분재한 것을 通計해보면 노비 6, 70인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 다른 날 분재할 때 宗孫 및 여러 자손들이 한결같이 평균 분급함에 있어 종손의 이와 같은 別得이 [均分을 해친다는]구실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金尙憲 遺書 및 奉祀條 부분〉



2) 재산소유 규모와 성격

분재 대상이 되는 재산은 17세기를 기준으로 볼 때 ①奴婢 ②田畓 ③家舍 ④家器·牛馬 등이다. 김씨 가문에는 노비와 전답 중심으로 분재되고 있다. 분재항목은 크게 봉사조와 각 각각의 분재 당사자가 分執하는 각자의 몫(衿)으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몫은 다시 分衿秩과 別給秩로 구분할 수 있다. 分衿

41) '夫人 쪽'은 김상헌의 처가로 성주이씨 쪽에서 상속된 재산이다.
42) '너의 처가'는 김광찬의 처가, 연안김씨이다.

秩을 자녀 간 균분 원칙에 따라 배정되고, 別給은 과거합격 등 각자의 능력에 따른 성과급 차원에서 배분된다. 따라서 별급은 그 능력이 발휘되는 시점에 따라 그 당시에 주어진다.

(1) 봉사조

김씨가의 봉사조 재산은 金尙憲이 그 아들 金光燦에게 분급한 노비 51구와 그 소생을 합하여 모두 176구가 기본이 되고 있다. 여기다 조모, 즉 김상헌의 처 星州李氏의 봉사조로 책정된 것이 10구, 그리고 양주 산소의 묘직노가 19구, 이를 모두 합하면 205라는 방대한 규모의 봉사조 노비를 책정, 운영하고 있다. 물론 이는 묘직을 제외하면 대부분 노비 身貢을 받아 爲先 비용에 충당하는 구조였다. 한편으로는 立議⑤와 같이 京中 거주 노비의 膳物(魚物)을 받아 祭物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전답의 경우 노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다. 양주 선산에 소재한 논 36두락과 밭 14畝 등으로 책정되어 있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白川과 安東 素山 등에도 약간의 전답이 책정되어 있고 양주의 庶尹 祖考妣 즉 金璠의 처 봉사조로 묘위답 6두락이 책정되어 있다. 경상도 등 이 시기 在地 양반가의 경우에 비해 월등히 많은 봉사조를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立議 가운데 김상헌은 종손이 경영하는 이 봉사조 재산이 자녀 간 균분의 뜻에 어긋난다고 종손에게 시비를 거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조치에서 그 자신도 과도한 봉사조를 염두를 두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다. 김상헌 유서의 첫 부분에도 강조하듯이 宗祀야말로 어떠한 禮法보다도 앞서는 것이어서, 서울 명문 양반가에서 宗法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은 물론 적자녀 재산의 1/5이라는 국법인 經國大典이 규정조차도 무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봉사조 재산을 도표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奉祀條 재산 내역〉

	노 비		전 답		
	거 주 지	口數	지역	畓(斗落)	田
外方	安 東	10	楊州	36	15畝, 代田

	醴 泉	16	白川	20	0.5日耕
	豊 基	2	安東	9	牟田 3坐, 木花田
	成 川	3	庶尹祖考妣 墓田	6	
	殷 山	5			
	谷 山	8			
	丹 城	11			
	衿 川	1			
	松 禾	10			
	文 化	5			
	臨 津	23			
	富 平	25			
서울	京 中	1			
	西 江	56			
	소계	176			
祖母奉祀條奴婢	衿 川	9			
	楊 州	1			
山所墓直	楊 州	19			
合計		205	합계	71	

(2) 자녀별 分執 재산

분재량은 嫡子女와 庶子女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은 관행이 아니라 서자는 적자녀 상속분의 1/7이라는 법률에 근거한 것이었다. 하지만 입의 ⑨에서 합의하고 있듯이 서자녀에게는 '破格'적으로 우대하여 지급하고 있다. 이는 庶母 청주한씨에게도 적용되어 노비 28구, 논 19두락이 그녀에게 지급되었다. 이는 김제남의 역적 사건으로 연루되어 청주한씨가 후처로 들어갔다가 첩으로 강등되는 비운을 맞고 이에 대해 김상헌의 별급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배려에 의해 서자녀 4남 1녀는 8구의 노비를 공히 분배 받았다.

적자녀 3남 5녀가 분집한 노비의 수는 모두 370구이고 논은 380두락이며, 이 가운데 밭이 26.7일경, 41두락이었다. 각 자녀들이 노비 45구, 논 40-48두락을 기준으로 정확히 균분하고 있다. 이는 봉사조를 법규와 상관없이 과다하게 책정하여 봉사자를 우대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조치였다. 균분의 해소는 3번에 걸친 과거별급으로 우대받은 김수흥, 김수항이 都分財 당시에

재산을 다른 형제들에게 양보한 것이다.(입의 ⑦) 이들 형제가 과거 별급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도분재 당시에 誠心으로 양보한 것은 타 가문에서는 일찍이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특이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전답의 경우 김수흥에게 타 자녀에 비해 약간 優給되었지만 균분에 크게 어긋나는 것은 아니었다. 장남 김수증에 안동 소산의 家舍가 지급되는 등 남자들에게 家垈나 瓦家가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분재는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앞서 언급한 科擧에 대한 별급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적자녀 3남 5녀 가운데 2녀 홍주천을 제외한 모두가 대소과에 합격하였고, 서자녀 가운데서도 김수징, 수응, 수능이 대소과에 합격하였다. 이들에게 주어진 별급을 합친다면 이들 각자의 재산은 이 분재에서의 재산보다도 더 많았을 것이다. 분재내용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자녀별 분재 내역〉

	奴婢		田畓		
	地域	口數(口)	地域	畓(斗落)	田(日耕)
①1女 李挺岳 (李僉正宅)	安東 臨津 白川 谷山 成川 平山 興陽 延安 濟州 豐基 沃溝 長興 衿川 開城府 明川 利城 吉州 咸興 德山 富平 燕岐(11)	45 (外邊 2)	衿川 白川	45 (外邊10)	5
②2女 洪柱天 (洪陽城宅)	谷山 成川 臨津 興陽 濟州 豐基 醴泉 京 松禾 善山 利城 明川 咸興 吉州 海美(15)	45 (外邊 6)	衿川 白川	48 (外邊10)	4
③3女 李重輝 (李高靈宅)	醴泉 安東 谷山 長湍 延安 成川 濟州 松禾 南原 臨津 白川 豐德 利城 明川 咸興 吉州 京 海美(18)	45 (外邊 3)	衿川 通津 百川	48 (外邊10)	4
④1男 金壽增 (安岳宅)	醴泉 白川 延安 豐基 京 文化 濟州 松禾 衿川 成川 信川 利城 明川 北靑 吉州 朔寧(16)	45(外邊 1, 逃亡 2)	楊州 安東	37(安東 素山 家舍 1坐)	2.5 +11두락
⑤2男 金壽興 (判書宅)	星州 谷山 臨津 成川 殷山 南原 濟州 楊州 開城府 利城 明川 北靑 端川 白川 德山 仁川(16)	36(外邊 1)	安東 楊州 朔寧	67(外邊10) 家垈 1坐	9두락
⑥3男 金壽恒 (政丞宅)	安岳 豐基 全州 興陽 濟州 臨津 白川 谷山 殷山 成川 濟州 醴泉 長湍 利城 明川 端川 吉州 白川(18)	36(外邊 5)	衿川 京城 安東 德山	47(外邊22) 瓦家 家代	2 +21두락 (外邊2 일경)
⑦4女 宋奎濂 (宋正郎宅)	白川 安東 醴泉 興陽 谷山 殷山 臨津 白川 濟州 長湍 淸州 利城 明川 端川 吉州 燕岐 富平(17)	45(外邊 6, 逃亡 1)	高陽 德山 白川	48(外邊10)	4

⑧5女 李光稷 (李持平宅)	富平 松禾 京城 醴泉 沃溝 興陽 臨津 白川 殷山 谷山 成川 濟州 長湍 善山 京中 白川 殷山 明川 咸興 端川 吉州 仁川 公州 朔寧(24)	45(外邊 5)	南陽 德山 朔寧	40(外邊10 두락)	5
⑨庶母 (淸州韓氏)	谷山 醴泉 安東 星州 臨津 文化(6)	28(祖父 親得+後所生)	楊州	19	1
⑩庶1男 金壽徵	豐基 谷山 星州 臨津 興陽(5)	8(逃亡 1)			
⑪庶2男 金壽應	谷山 文化 豐基 白川 京中 臨津(6)	8(逃亡 1)			
⑫庶3男 金壽稱	谷山 平山 京 臨津 白川(5)	8(逃亡 1)			
⑬庶4男 金壽能	谷山 衿川 白川(3)	8			
⑭庶1女 許墅 妻	興陽 醴泉 松禾(3)	8			
合計		410		399	27.7 41두락

4. 맺음말

1672년 당시 안동김씨 金壽增 형제남매가 분재한 재산은 노비 410구 전답 500여 斗落에 달하였다. 17세기 중엽 과거와 관직, 禮學을 주업으로 하는 서울의 學術官僚型 양반의 재산보유 규모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례로 판단된다. 노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답이 적은 것이 영남 등 같은 시기 여타 양반가와 차이가 나는 점이다. 김상헌의 遺書를 통해 보면 그의 당대에도 아마도 이에 상당하는 정도의 재산을 보유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이에 대해 청음은, '吾家世業 庳具中人産'이라 하여 김씨들이 班家의 중간 정도의 産業을 갖추었다고 하였다. 물론 여기서 班家란 대대로 과거와 관직을 역임한 서울의 일류 양반가를 기준으로 했을 것이다. 최근 다량으로 발굴된 海州鄭氏에는 김씨 가문과 동시대의 분재기가 전한다.[43] 17세기 초반 정씨가문은 노비 600여 구 전답 730여 두락 20일경, 후반의 경우 노비 200여 구 전답 70두락 2일경을 보유하고 있었다.[44] 정씨 가문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안동김씨

4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편, 『古文書集成 124・125—楊州 海州鄭氏篇』,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8.

44) 權五貞, 「朝鮮時代 女性의 財産相續事例硏究 : 海州鄭氏家 古文書의 解題」, 韓國學中央硏究院 韓國學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18, 118-148면.

김수증 가문 또한 유사한 수준의 재산을 보류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분재기에 나타나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봉사조가 노비 205구, 전답이 100여 두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게 책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淸陰 이래 禮學 가문으로서 종법과 제례를 중시하는 김씨 가문의 家風의 영향도 작용했다고 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또한 봉사조 재산을 종가에서 운영토록 하는 것은 자녀 간 균분의 본뜻을 저버리고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지만 이는 주자학적 질서를 가정 경제 운용에 적용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오히려 사대부들이 장자의 경제적 지위를 공고히 해주는 본보기가 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김씨가의 노비는 대부분 경상도 전라도 함경도 등 전국의 군현에 분포한다. 이들은 使喚 노비가 아니라 身貢 노비로 존재한다는 뜻이다. 즉 노비에 대한 納貢 중심의 경제구조이다. 영·호남 등 在地 양반의 경우, 노비는 자기들이 거주하는 境內지역으로 노비를 集積시키고 소유 토지를 병작시키는 등 신분관계를 경제운용에 최대한 이용하는 경영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김씨가문과 같이 토지와 결부되지 않은 노비의 보유와 운용은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를 지닌다. 양란 이후 광범위한 노비도망은 일반적 양상으로 정착하게 되는데, 이는 일시에 班家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트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김씨가와 같은 서울식 노비 운용의 취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19-20세기 서울이 개화되면서 김씨 가문의 근거지가 사라지게 된 것도 이 같은 경제구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17세기 서울의 班家 海州鄭氏의 分財量〉

分財記名	奴婢數	土地面積	家舍 등
1607년 鄭欽 남매 화회문기	634口	田 78負 20日耕 家垈 畓 355.2負 731斗落	3坐(2坐別給) 家價奴婢 9口
1619년 鄭欽 妻 平山申氏 남매 화회문기	277口	田 150.6負 21斗落 10.49日耕 畓 132.5負 276斗落	瓦家 2坐 空垈 80間
1638년 鄭孝俊 남매 화회문기	415口	田 84.8負 16斗落 8.83日耕 畓 144斗落	家垈 4坐
1667년 鄭植 남매 화회문기	208口	田 7斗落 2日耕 畓 161.5斗落 10負5束	
1683년 鄭重徽 남매 화회문기	194口	陽川田畓, 水原堰畓, 沔川畓, 順安田畓, 溫陽田畓,水原三峯田畓	
1699년 鄭以寧 남매 화회문기	225口	田 10.5斗落 2日耕 畓 59.5斗落	家垈 1坐

▮ 참고문헌

『문곡집』, 『승정원일기』, 『安東金氏世譜』, 『현종개수실록』, 『현종실록』.

權五貞, 「朝鮮時代 女性의 財産相續事例硏究 : 海州鄭氏家 古文書의 解題」, 韓國學中央硏究院 韓國學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18.

文叔子,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경인문화사, 2004.

李榮薰, 「古文書를 통해 본 朝鮮前期 奴婢의 經濟的 性格」, 『韓國史學』 제9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사학연구실, 1987, 91-172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편, 『古文書集成 105—공주 안동김씨 김상헌・진주유씨 유충걸 후손가 고문서』,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_____, 『古文書集成 124・125—楊州 海州鄭氏篇』,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_____, 『公州 安東金氏 金壽稱 後孫家 所藏 遺墨・簡牘帖』,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 예정.

「문화원형 용어사전」,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www.culturecontent.com/.

「한국고전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https://terms.naver.com/.

「한국세시풍속사전」, 국립민속박물관, http://folkency.nfm.go.kr/.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ansan.grandculture.net/.

「해외한국학자료센터」,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ttp://kostma.korea.ac.kr/.

【Abstract】

Property management of Seoul's noble family in the Late Chosun Dynasty—Analysis of Kim Su-jeung's siblings Bunjaegi (分財記) in the Kyoto University's Kawai Library—

Ahn, Seung-Jun*

At Kyoto University and Tokyo University in Japan, many old documents (古文書) by eunuch, court lady or the yangban such as Andong Kim Clan in Jang-dong, Dongnae Jeong Clan in Hoehyeon-dong will be handed down. In this article, introduced the Bunjaegi (分財記) of Andong Kim Clan's Kim Su-jeung, Kim Su-hang and his siblings, and looked at the size of their assets. In 1672, Kim Soo-jeung's brothers distributed assets was amount to Slave 410 gu (口) and farmland 500 durak (斗落). It is considered a very meaningful case in that it is the size of Seoul's academic and bureaucratic Yangban's property holdings, which are based on the gwageo (科擧), government posts and yehak (禮學) in the mid-17th century. The relatively small area of farmland compared to slaves is the difference between Yangban's familly of Yeongnam and other regions during the same period.

To summarize the characteristics of Bunjaegi (分財記), the following:

First, for the purpose of bongsa (奉祀), appropriated budget was that the be amount to slaves 205 and farmland 100 durak (斗落). In addition, for the purpose of bongsa (奉祀), run their property at the head family (宗家) betrayed the original meaning of equal distribution to their children and resulted in non-compliance with the law. however, this is a case in which the order of neo-Confucian (朱子學) is applied to the management of the domestic economy, and rather sets an example for the sadaebu (士大夫) to consolidate the economic status of the eldest son.

Second, Most of Kim's slaves are distributed to counties and prefectures across the country, including Gyeongsang-do, Jeolla-do and Hamgyeong-do. These slaves exist as sin-gong (身貢) and not sahwan (使喚), which means an economic structure centered on

* Head Researcher,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napgong (納貢) for slaves. As such, the possession and operation of slaves of non-related with farmland has a very weak economic structure.

Keywords: Andong Kim Clan (安東金氏), Kim Su-Jeung (金壽增), Kim Su-Hang (金壽恒), Kim Sang-Heon (金尙憲), Dongnae Jeong Clan (東萊鄭氏), Bunjaegi (分財記).

접수일: 2019.06.28 ‖ 심사일: 2019.07.16 ‖ 게재확정일: 2019.08.16